

# 과목명: 보험론



**담당교수: 원광대학교 경영학부 정호일**

**주교재: 리스크와 보험**

## 제5장 보험계약의 구조

### 목 차

- 1절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
- 2절 보험계약의 기본요소
- 3절 보험계약 당사자와 보험계약의 관계자
- 4절 보험자의 이행보조자

# 학습목표

1. 보험증권의 성격 이해

2. 보험계약의 공통적인 구조와 기본 요소들의 이해

3. 보험사고의 보험방식의 유형 및 차이점 이해

4. 면책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이해

5.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타보험조항 등과 같은  
약관조항에 대해 이해한다.

6. 자기부담금과 공동보험의 내용과 사용근거에 대해 이해한다.

7.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충족시켜야하는 여러 조건에 대해  
이해한다.

# 제1절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

## 1. 보험증권

### 1) 의의

-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(계약관계를 나타내는 증거증권)
- 보험계약은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면 성립하고, 그 계약의 성립요건은 요식행위를 요구하지 않는 낙성/불요식의 계약.(계약성립과는 무관)
- 보험증권의 발행에 의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(비설권증권)-보험계약 성립 시 권리와 의무 발생
- 보험증권 교부의 의무: 보험자는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함.(법정의무)

## 2) 법적 성격

### ① 요식증권성

- 일정한 사항을 기재
- 기재 기본사항:보험의 목적, 보험사고의 성질, 보험금액,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, 보험기간을 정한 때는 그 시기(始期)와 종기(終期), 무효와 실권의 사유,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, 보험계약연월일,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연월일
- 보험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별도의 기재사항을 규정
-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성명을 별도기재사항으로 하지 않음

### ② 증거증권성

- 보험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가 발행하는 증거 증권-이의 없이 수령하는 경우 그 기재가 계약의 성립 및 내용에 대한 확정인 아닌 추정력을 가짐(자체가 계약서는 아님)
-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도 계약의 내용이 됨-비문언 증권

### ③ 면책증권성

-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그 증권의 제시자의 자격을 조사하여야 할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는 면책증권. 즉 준점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다시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됨.

### ④ 상환증권성(=제시증권성)

- 실무적으로 보험증권과 상환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기에 상환증권의 성격을 띠지만, 보험증권이 아니더라도 보험청구권자가 다른 방법으로 피보험자임을 입증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환증권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통설(증권 분실 시 피보험자는 법원을 통해 제권 절차를 밟아야 함)

### ⑤ 유가증권성

- 재산을 표장하는 증권으로서 권리가 증서에 체화되어 권리의 발생, 이전,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.
  - 인보험, 손해보험 중 지명증권은 유가증권성 부정
  - 지시증권이나 무기명 증권은 일부 유가증권성의 성질을 일부 가짐(통설):운송보험, 적하보험-배서가능

## 2. 보험약관

### 1) 의의

- 보통보험약관(=표준보험약관)이란 보험자가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일반적, 보편적, 표준적인 계약조항을 말함.(일반적인 계약조항)
- 특별약관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개별적으로 계약내용을 협의하여 정한 약관(개별약관)으로 보통보험약관의 보상내용을 확장하거나 제한하는 역할을 함.-보통보험약관에 우선 적용
-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.

### 2) 존재이유

- 다수인을 상대로 다수의 계약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내용을 정형화하여야 한다는 기술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

### 3) 기재사항(보험업법시행규칙에 법제화-보험계약자 보호)

- 보험금 지급사유, 보험계약 무효의 원인, 보험회사 면책사유, 보험회사 의무한계를 정하는 방법과 그 의무를 이행할 시기,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의무불이행시 받을 손실,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의 해제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,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을 때 그 범위.

# 제2절 보험계약의 기본 요소

## 1. 보험의 목적(물)

- 보험사고발생의 객체
- 피보험자의 재물, 생명 또는 신체
  - 손해보험의 목적:경제상의 구체적인 유체물(가옥, 자동차, 선박 등)과 무체물(특허권 등)
  - 인보험의 목적:사람의 생명이나 신체(자연인만 해당)
    - 사망보험의 경우 15세미만인자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는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없다. 한정치산자는 심신상실자나 심신박약자가 아니면 가능)

## 2. 보험계약 당사자

- 보험계약당사자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되지 못함.

### 1) 보험자(insurer)

-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의 지급, 기타의 급여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
- 위험단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주체
- 한국은 보험업법 규제를 받는 손해보험주식회사와 생명보험주식회사가 있고 특별법의 규제를 받는 공제 등이 있음.

## 2) 보험계약자(contractor of insurance)

- 자기 명의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
- 자격제한이 없음.
- 보험계약을 보험계약자가 직접 체결하여도 되지만 그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할 수도 있다.(미성년자,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도 가능-법정대리인)

## 3. 보험계약의 관계자

### 1) 피보험자(insured)

-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자
- 손해보험-보험사고에 대해 손해를 입어 보상을 받는 사람
- 인보험
  - 그 사람의 생명 또는 상해에 대해 보험증권이 발행된 사람
  - 보험에 붙혀진 생명 또는 신체
  -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수익자가 보상을 받음
  - 사망보험에서는 15세미만자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없음.
  - 상해보험은 피보험자의 자격제한이 없음. 타인의 상해보험이라도 타인의 동의가 불필요.
  - 1인 이상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, 자녀등으로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할 수도 있음.

## 2) 보험수익자(beneficiary)

- 인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
- 대륙법에서는 피보험자의 동의만 있으면 누구나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으며 (동의를주의-한국), 영미법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는자가 수익자가 될 수 있음(피보험이의주의)
- 인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험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정함.
  - 만기시: 보험계약자
  - 부상 후유장애: 피보험자
  - 사망시:보험계약자가 지정, 지정하지 않으면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
- 도덕적 위태 예방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이외의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함.

## 4. 보험계약의 이행보조자

### 1) 보험대리점

- 보험계약대리점: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의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
  - 보험3권을 가짐(보험계약체결권, 보험료영수권, 고지수령권)
  - 보험업법에서 계약대리점 인정
- 보험중개대리점: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
  - 보험료 영수권 인정 다수설
- 보험자의 보험3권 위임계약에 따라 권한이 달라짐(관행)
- 실무에서는 중개대리점만 인정

## 4. 보험계약의 이행보조자

### 2) 보험설계사=모험모집인

-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(독립된 상인이 아님, 대리권 없음)
- 보험3권이 없음

### 3) 보험회사의 상업사용인

- 보험자에 종속되어 영업상의 노무에 종사하는자
- 지배인, 부장, 과장, 계장, 주임 등 직할영업부의 직원
- 보험3권이 있음

### 4) 보험의

-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맡아 위험측정의 자료를 수집하여 소견을 보험자에게 제공해주는 의사
- 보험3권이 없음.

### 5) 보험중개사

-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 상인(보험계약자의 대리인)
- 보험3권이 없음

## 5. 보험사고

### 1) 의의

- 보험자가 약관 상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것
- 보험금지급사유(부보된 위험의 현실화)
- 정해진 보험의 목적에 관해서 보험기간중에 우연히 생긴 것이어야 하고 그 사고의 범위가 한정된 것

### 2) 손해보상방식

#### ▪ 열거위험담보

- 보험계약상 약관이나 증권에 담보하기로 명시된 원인에 의한 손해만 보상(자동차의 충돌, 접촉, 추락, 전복, 화재 등)
- 면책조항 있음(지진발생에 의한 추돌, 무면허운전에 의한 대물사고 등)

#### ▪ 포괄위험담보

- 손인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발생한 우연한 손실에 대해 보상(
- 열거위험담보에 비해 보상범위가 넓어 보험료가 높게 책정
- 면책조항이 있음.

## 6. 보험료

### 1) 의의

-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할 금액(담보의 대가)
- 보험료 선납 및 전납의 원칙
- 계약 성립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1회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봄
  - 실효계약:
  - 계약의 부활:

### 2) 보험료의 구성

- **순보험료=위험보험료+저축성보험료**
  - 위험보험료:사고로 인한 손실보상액의 재원
  - 저축성보험료:중도 환급 및 만기환급금의재원
- **영업보험료=순보험료+부가보험료**
  - 저축성보험료가 없는 경우:보장성보험 또는 소멸성보험
  - 저축성보험료가 있는 경우:저축성보험(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)

## 6. 보험기간(위험기간, 담보기간, 책임기간, 부보기간)

### 1) 의의

- 사고 발생에 대한 시간적 제한
- 보험자가 담보책임을 지는 기간

### 2) 보험기간의 종류

- 기간보험: 00년0월0일부터~xx년xx일xx시까지
- 구간보험: 특정사실이 있을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
  - 적하보험: 선적에서 인도까지
  - 운송보험: 인도받을 때부터~인도할때까지
  - 여행자보험: 여행의 출발~여행의 도착
- 혼합보험: 구간보험과 기간보험의 혼합
- 보험료납입일로부터 보험자 책임개시
- 종신보험/정기보험 등

## 7. 보험금액, 보험가액, 보험금

### 1) 보험금액(insured amount=face amount)

- 보험계약금액 또는 보험가입금액
- 보험사고가 발생시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계약상의 최고한도액
- 생명보험의 경우 정액보험으로 보험금액과 보험금이 일치

### 2) 보험가액(insurable value)

- 피보험이익의 평가액
- 발생가능한 손해액의 최고치(실질가치)
- 보험금은 보험가액이상이 될 수 없음(실손보상의 원칙적용시)

### 3) 보험금(insurance money)

-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자가 지급하는 금액
-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
-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지급
  - 일부보험(보험금액<보험가액): 보험금액을 한도로 비례보상
  - 초과보험(보험금액>보험가액): 보험가액을 한도로 지급
  - 중복보험(보험금액의 합>보험가액): 동일 보험목적물에 여러건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
    - 중복보상을 방지하기 위해 타보험조항이 있음.

## 8. 보험금 산정과 관련된 조항

### 1) 자기부담금

- 보험자가 지불하는 보험금으로부터 공제되는 일정금액
- 재산보험, 건강보험, 자동차보험에서 활용
- 생명보험이나 개인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 없음
- **목적**
  - 소액 보상청구의 방지
  - 보험료의 절감
  - 손실방지 독려
- **형태**
  - **정액 자기부담금**
    - »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 보험금에서 공제
  - **누적 자기부담금**
    - » 연간 발생한 손실이 누적되어 일정수준의 손실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
  - **프랜차이즈 자기부담금**: 손실에 대한 일정비율이나 절대금액으로 자기부담금(프랜차이즈공제비율)을 정해서 누적손실이 공제비율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 전액보상 이하인 경우는 보상이 없음

## 2) 공동보험조항

- 일부보험인 경우 손실의 일정 부분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제도
- 공동보험은 손해발생시점에 피보험자보험가액의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하는 조항
- 규정
  - 보험금액  $\geq$  보험가액의 80%
    - 보험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보상
  - 보험가입금액  $<$  보험가액의 80%
    - 보험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 $\times$  (보험금액/보험가액의 80%)
- 목적
  - 손실방지 효과
  - 요율의 형평성(equity in rating)
- 문제점
  - 물가상승에 따라 보험가액 상승과 함께 보험가입금액 상승되어야 하므로 피보험자 불이익 요소 존재
  - 보험가입금액이 요구보험액에 못 미친 경우

### 3) 타보험조항

- 하나의 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이 2개 이상인 경우 동일한 손실에 대한 중복보상을 방지함으로써 손실보상의 원칙을 지지하고 도덕적 위태를 감소하기 위해 사용
- 형태
  - 비례분할부담조항
    - 각 보험사에 체결한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보상
  - 균일부담조항
    - 각 보험증권의 가입금액이 소진되거나 발생한 손해가 전액 지급될 때까지 각 보험사가 동일한 분담 금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
  - 초과부담조항
    - 손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게되는 일차 보험자가 자신의 보상한도까지 보상으르 하게되고, 나머지는 두번째로 책임이 있는 초과보험자가 자신의 보상책임한도 내에서 보상하게 됨.

## 9. 면책조항

-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게 하는 조항
- **면책손인**: 특정 손인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조항
  - 도덕적 위태 방지
  - 중복보험 방지
  - 별도의 요율산정 방지
  - 민영보험사의 영리 추구
- **면책재산**: 특정 재산을 보험목적물에서 제외
  - 특정 재산이 다른 보험에서 담보됨
  - 도덕적 위태의 발생 가능성
  -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 제외
- **면책손실**: 보험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특정손실
  - 부보가능하지 않은 유형의 손실
  - 간접손실, 소모 마모에 의한 손실

## 10. 조건부분

-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 및 기타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게 하거나 혹은 제한하는 중요한 부분
-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상을 받기위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의무
  - 위험변경·증가의 통지의무
  - 위험변경·증가의 금지의무
  -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
  - 협력 의무
  - 손해방지의무

## 11. 특약조항(endorsement or rider)

- 기본계약의 조항을 변경하거나 담보의 추가 및 삭제가 가능한 조항

# 1. 연습문제

1. 보험증권의 법적 특성을 설명하시오.
2.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는 방식은 어떻게 분류되며, 그 내용은 무엇인가?
3.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시오.
4. 갑은 절친한 친구가 소유한 자동차를 빌려 타고 동창생들과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났다. 이 경우 갑은 친구가 소유한 자동차를 담보하는 자동차 보험 하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논하시오.
5. 공동보험조항이란 무엇이며, 왜 이런 조항이 필요한가?
6. 일반적으로 조건 부분에 해당하는 조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?
7. 표준약관과 특별약관의 필요성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.
8. 자기부담금의 필요성과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.
9. 자동차보험에서 사용되는 타 보험조항에 대해 설명하시오.
10. 균일부담조항이 배상책임보험에서 많이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인가?
11. 면책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?
12. 면책의 유형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시오.

수고하셨습니다.